

- '22.12.1.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에 따른 -**화재예방법(제정) 및 소방시설법(개정) 주요 사항**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 난 예 방 과)

1 (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국가는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소방청장)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화재예방법 제4조 ('22. 12. 1.)	기본계획 명칭 변경
계획	<신 설>	• (소방청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화재예방법 제5조, 제6조 ('22. 12. 1.)	실태조사 통계작성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조사 실시 - 자체점검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불완전하다고 인정 -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 -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	화재예방법 제7조 ('22. 12. 1.)	명칭 변경
화재안전조사 방법절차 등	종합조사와 부분조사 구분 없음조사 7일전까지 관계인 에게 서면 통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 중 선택실시 사전에 관계인에게 우편 전화, 전자 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화재예방법 제8조 ('22. 12. 1.)	조사의 실효성 확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관계인이 조치명령 미이 행시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30일 이상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화재예방법 제16조 ('22. 12. 1.)	국민의 안전선택권 보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또는 소 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명령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행위금지(일반적 금지조항) 제조소등,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판매소 수소연료공급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종전의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 및 노 · 화덕설비는 6개월 이내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화재예방법 제17조 ('22. 12. 1.)	고양저유소 풍등 화재 대책
특수가연물	• 표지 규격 없음	• 종전의 특수가연물은 6개월 이내 표지 설치(시행령 별표3 제2호)	화재예방법 제17조 ('22. 12. 1.)	표지규격 신설

제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화재예방 강화지구	· 화재경계지구 - 관련 조례 없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변경 지정대상 확대(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조례제정, 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가능 ※ 도 조례 제정중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9조 ('22. 12. 1.)	명칭 변경 비용 지원
화재안전영향 평가	<신 설>	(소방청장) 법령이나 정책 개선 필요시 실시 후 소관 기관장에게 결과 통보 (기관장)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 노력	화재예방법 제21조 ('22. 12. 1.)	화재 주관부처 위상과 역할 강화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신 설>	•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노력	화재예방법 제23조 ('22. 12. 1.)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근거 마련
특급 소방대상물 기준 강화	∘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법 제24조 ('22. 12. 1.)	대상 확대
3급 대상물 기준 변경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주택전용 제외)	화재예방법 제24조 ('22. 12. 1.)	등급 변경
소방안전관리 개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소방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종전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 이내 안전 관리자 자격증 발급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권원별 및 2년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겸직 금지(특급, 1급)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일시적 겸직 가능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가능 대상 11층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및 아파트 제외)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법 제24조~제35조 ('22. 12. 1.)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제도 개선 등

제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범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제도 도입 ←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 실무교육 미이수등 법령위반시 행정처분(경고~취소) 		
소방훈련·교육	<신 설>	 특급 및 1급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서장)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불특정 다수 인명피해 예상되어 소방 훈련・교육 필요 인정 대상물 	화재예방법 제37조 ('22. 12. 1.)	훈련·교육 관리 강화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신 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선임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사용승인일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 + 교육이수자 선임대상 신축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지하층 2개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지상층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화재예방법 제29조 ('22. 12. 1.)	공사현장 안전강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대상 확대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산업기술단지 1천명 이상 영화상영관 전력 및 통신용 지하구 점포 500개 이상 전통사장등 	• 기존대상 + 신규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 -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법 제40조 ('22. 12. 1.)	국가 기반시설
화새예방 안전진단	<신 설>	안전원, 외부 진단기관으로부터 실시 (당해연도 자체점검, 교육·훈련 면제) (최초진단) 완공검사 5년이 경과한 날 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법 제41조 ('22. 12. 1.)	화재예방 안전진단

제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 (실시대상) -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 이상 공항시설 - 역 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철도 · 도시철도 시설 -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 연면적이 5천㎡ 이상 항만시설, 공동구 등 ● (정기진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 상이 - (우 수) 등급 통보일부터 6년이 경과한 해 - (양호·보통) 등급 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한 해 - (미흡·불량) 등급 통보일부터 4년이 경과한 해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소방시설 설치 · 관리 등 정책 수립 시행	<신 설>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소방시설법 제3조 ('22. 12. 1.)	국가 및 지자체
관계인의 의무	<신 설>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 보전·향상 - 매년 소방시설 관리 재원확보 -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 -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 등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 	소방시설법 제4조 ('22. 12. 1.)	관계인 의무
건축허가 동의시 검토사항 확대	소방사장은 소방시설법 및 관련 명령을 따르고 있 는지 검토	 ● 신규 검토사항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등 -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등 	소방시설법 제6조 ('22. 12. 1.)	건축허가 동의 제도 개선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 연면적 20만㎡ 이상 ∘ 30층 이상 또는 지상에서 높이 120m 이상 등	● 신규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 또 는 지하층 층수 2개 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 이상 -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터널	소방시설법 제8조 ('22. 12. 1.)	성능위주설계 소방청 고시 → 법률로 상향
자동차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고압가스 운송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을 제작·조립·수입·판매자 또는 소유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 확인 → 매년 12.31.까지 청장에게 결과 통보 	소방시설법 제11조 ('24. 12. 1.)	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의 관리 등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조치명령 가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 금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평상시 / 위반시 과태료 · 조치명령) 화재 시 소방사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치단 행위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시간 소방사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시설법 제12조 ('22. 12. 1.)	벌칙 규정 명확화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 공동주택 - 아파트등, 기숙사	 ●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연립·다세대 주 택 추가) 및 간이스프링클러,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설치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 ('24. 12. 1.)	연립 및 대세대주택
전통시장 소방시설 확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화재알림설비 설치 알림설비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속보설비 면제	소방시설법 제12조 ('23. 12. 1.)	전통시장 설치 소방시설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 (특례)	○ 강행규정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공동구, 전력ㆍ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 방시설 ○ 노유자시설 간이SP, 자탐,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 (간이)SP, 자탐, 자동화재속보설비	 임의규정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공동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막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법 제13조 ('22. 12. 1.)	소급정비 (자탐추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기존 4종 +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화재위험작업현장 - (방화포) 용접·용단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	소방시설법 제15조 ('23. 7. 1.)	신규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선	<신 설>	 성능기준(중요시항)과 기술기준(규격, 수치)으로 분리 기존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 	소방시설법 제19조 ('22. 12. 1.)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제 목	중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자체점검 제도운영	○ (점검자) 관계인, 관리 업자,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된 기술자격자 (관리사 또는 기술사) ○ (최초점검) 완공일 익년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 ○ (관계인 보고) 규정없음 ○ (점검비용)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 (점검유예) 규정없음(자침으로 운영)	 (점검자) 관계인,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술자격자 (최초점검)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관계인보고) 관리업자등 점검시 점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비용)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공표·활용 권고 (점검유예)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시 만료일 3일전까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면제 또는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소방시설법 제22조 ('22. 12. 1.)	자체점검 변경
		●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의무화 - 평가 받지 않고 자체점검시 행정처분	소방시설법 제22조 ('24. 12. 1.)	
자체점검 결과 조치	<신 설>	 (점검결과) 점검자는 점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중대위반) 관계인은 지체없이 수리 (배치신고) 관리업자 점검시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배치신고 (결과보고) 관계인은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결과보고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시)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중대위반 조치사항 포함) 이행계획서 부적합시 보완요구 (이행계획 연기) 기간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 신청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통보 	소방시설법 제23조 ('22. 12. 1.)	자체점검 결과 보고 개선
점검결과 게시	관리업자가 점검시 대상 물에 점검기록표 부착(위반) 300만원 야하 벌금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점검기록표 게시(위반시 과태료) (소방서장) 점검결과 전산시스템 또는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국민 공개 	소방시설법 제24조 ('22. 12. 1.)	관계인 의무로 변경

제 목	종 전 내 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비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등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 소지시 관리사 시험 응시 가능 점검과목 변경 - (1차) 전기·기계 점검실무 편성 - (2차)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 추가	소방시설법 제25조 ('27. 1. 1.)	실무중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	<신 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주 인력) 관리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1명 이상 + 3년 이상 1명 이상 (보조인력) 고급·중급·초급각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범위) 1급, 2급, 3급 (주 인력) 관리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1명 이상 (보조인력) 중급·초급 각 1명 이상 (보조인력) 중급·초급 각 1명 이상 ※ '24.11.30.까지 일반소방시설 관리업도 특급대상 영업가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개정을 통해 특급~ 초급 점검자 규정 신설(진행중) 	소방시설법 제29조 ('24. 12. 1.)	공사업법에 준해 관리업 세분화
관리업의 운영제한	<신 설>	•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업무대행이나 점검 금지 ※ 도급계약 미해지시 대행 또는 점검 중 업무 수행가능	소방시설법 제33조 ('22. 12. 1.)	소방시설 공사업과 형평성 유지
소방용품의 수집 검사 등	(소방청장) 유통중인 소방용품 수집검사 중대한 결함시 판매중지,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 (신설)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	소방시설법 제45조 ('22. 12. 1.)	판매 ·사용 중인 소방용품 회수 또는 교환 가능